

[www.maf.go.kr](http://www.maf.go.kr)

# 농 지 법 령 집

2007.7



농 림 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한국농촌공사



## 목 차

- 농지법·농지법 시행령·농지법 시행규칙 / 3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 235

-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 249

- ❖ 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 259



---

농지법·농지법 시행령·농지법 시행규칙



##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목차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9	제1조 목적 / 19	제1조 목적 / 19
제2조 정의 / 19	제2조 농지의 범위 / 19	제2조 농지개량의 범위 / 21
	제3조 농업인의 범위 / 23	제3조 부속시설의 범위 / 22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 26		제4조 상시종사의 범위 / 25
제4조 국가 등의 의무 / 27		
제5조 국민의 의무 / 27		
제2장 농지의 소유	제2장 농지의 소유	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 28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제5조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의 용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 29	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 단체 등의 범위 / 28
	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 30	제6조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 29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 32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33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 34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 36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36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 41	제8조 농지의 위탁경영 / 41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43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 43	제8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 45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46	제10조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 / 46	제9조 농지매수청구서 등 / 46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 47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 49	제11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에 금융기관 / 50	
	제12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 50	제10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 50
		제11조 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 51



제3장 농지의 이용	제3장 농지의 이용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제14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 52	제13조 농지이용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자치구 / 52	제12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 56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 57	제14조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 53	제13조 농지이용 실태조사 / 57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 58	제15조 농지이용계획의 고시 / 55	제14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59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59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 57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 61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 61	제17조 등기의 촉탁 / 62	제16조 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 62
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 63	제18조 유희농지의 범위 / 64	

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 64

제21조 토양의 개량·보전 / 70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 72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74

제24조 임대차 계약 방법과 사용대차  
계약 방법 / 77

제25조 묵시적 갱신 / 77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 78

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 78

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 65

제20조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 66

제21조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 69

제22조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  
의 시행 / 70

제23조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 73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75

제17조 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 66

제18조 토지사용료의 지급 / 67

제19조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 68

제20조 토양의 개량·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 72

제21조 표준계약서 / 77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79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 79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제22조 주민의견 청취 / 79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 81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 81	제26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 81	제23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 80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 83	제27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 82 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 83	제24조 농업·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 93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86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86	제25조 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 94
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 99	제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96 제31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 99	

제2절 농지의 전용	제2절 농지의 전용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100	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100	제26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100
	제33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 103	제27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 / 103
	제34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 108	제28조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 103
제35조 농지전용신고 / 111	제35조 농지의 전용신고 / 111	제29조 농지전용허가 / 104
	제36조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 114	제30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 108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 114	제37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114	제31조 농지전용 신고 / 111
	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 119	제32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114
	제39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 121	제33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의 심사 / 116
		제34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118
		제35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 121

	제40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 122	제36조 복구비용반환청구서 / 127
	제41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등 / 123	
	제42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 125	
	제43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 126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 127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 128	제37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 129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 135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 135	
	제46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 136	제38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 136
	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 138	
	제48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 142	제3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 139
		제4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 142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 142	제4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 142
		제42조 납입기간의 연장 / 143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 146	제43조 독촉장 등 / 144
	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 150	제44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 / 145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152	제45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 146
		제4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 150
	제53조 부과기준 / 155	제47조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 152
	제54조 결손처분 등 / 156	제48조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 155
	제55조 부과·수납업무수수료 등 / 157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 의 구성·운영 / 157
	제5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 158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 158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 159	제57조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 160	제5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철회 등 / 159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 162	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 161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 164	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 162	제52조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 162

제42조 원상회복 등 / 166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167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 168

제45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 170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 174

제47조 경비 보조 / 175

제4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175

제49조 농지 원부의 작성과 비치 / 176

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167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

제61조 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 / 169

제62조 위원의 정수 등 / 170

제63조 위원의 임기 / 171

제64조 위원의 선임 / 171

제65조 위원의 해임 / 172

제66조 회의 / 173

제67조 위원회의 운영 / 173

제68조 위원회의 기능 / 174

제69조 수당 등 / 175

제70조 농지원부의 작성 / 176

제5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167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

제5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 170

제55조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 176

제56조 농지원부 등의 관리 / 176

제50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 179

제5장 보칙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 181

제52조 포상금 / 187

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  
한 행위 제한의 특례 / 188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189

제55조 청문 / 190

제56조 수수료 / 190

제57조 농지원부파일의 정리·보관 등  
/ 178

제58조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 / 179

제59조 자경증명의 발급 / 180

제5장 보칙

제60조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 181

제6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 186

제62조 포상금의 지급 / 187

제63조 증표 / 190

제5장 보칙

제71조 권한의 위임 / 181

제72조 포상금의 지급 / 187

제7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  
면적 / 188

제74조 수수료 / 190



제6장 벌칙

제57조 벌칙 / 193  
제58조 벌칙 194  
제59조 벌칙 / 194  
제60조 벌칙 / 195  
제61조 양벌규정 / 195  
제62조 이행강제금 / 196

부 칙

제1조 시행일 / 200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 200  
제3조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 201  
제4조 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 201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 196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 198

부 칙

제1조 시행일 / 200  
제2조 유효기간 / 200  
제3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적용례 / 203  
제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 203

제64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196

부 칙

제1조 시행일 / 200  
제2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200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200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01

제5조 농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202

제6조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 203

제7조 농지조성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204

제8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 206

제9조 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 206

제10조 농지분할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 206

제11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 207

제12조 농지의 정의에서 농축산물 생산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207

제1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 208

제5조 허가·협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적용례 / 203

제6조 농지의 범위에서 농축산물 생산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203

제7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 204

제8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 205

제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205

제10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 206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 206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08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208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 208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33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 data-bbox="510 363 622 400">농지법</p> <p data-bbox="315 440 797 477">개정 2007·04·11 법률 제8352호</p> <p data-bbox="315 499 797 536">개정 2007·05·17 법률 제8466호</p>	<p data-bbox="1003 363 1236 400">농지법 시행령</p> <p data-bbox="853 440 1386 477">개정 2007·6·29 대통령령 제20136호</p>	<p data-bbox="1541 363 1809 400">농지법 시행규칙</p> <p data-bbox="1422 440 1928 477">개정 2007·7·4 농림부령 제1563호</p>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p> <p>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p>	<p>배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li> <li>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li> <li>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li> </ol> <p>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li> </ol>	

<p>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p>	<p>2.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p> <p>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p> <p>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p>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p> <p>나. 가목 외의 시설로서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농</p>	<p>제2조(농지개량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후단에 따른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립부령으로 정한다.</p> <p>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p> <p>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p> <p>나. 축사와 농립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p> <p>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p>	<p>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 제2호나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립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와 연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p>



<p>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li> <li>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li> </ol>	<p>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li> <li>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li> </ol>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3.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p> <p>가.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p> <p>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p> <p>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p>	<p>하는 자</p> <p>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p> <p>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p>	

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p> <p>7.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p> <p>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p> <p>②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p>		

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농지의 소유</p> <p>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li> <li>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농지의 소유</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농지의 소유</p> <p>제5조(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p>

로 쓰기 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말한다.

제6조(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농림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p> <p>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p> <p>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p>	<p>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개발하여 매</p>	<p>세와 활용현황</p> <p>3.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 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p> <p>4.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지적도 등본</p> <p>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및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p>



<p>는 경우</p> <p>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p> <p>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0조·제58조·제68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p> <p>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p>	<p>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li> <li>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li> </ol> <p>② 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p>	<p>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p> <p>⑤ 농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 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해당</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p> <p>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p> <p>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p> <p>③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p> <p>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p> <p>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p>		<p>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p>

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제2항 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i> <li>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i> <li>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i> </ol>	<p>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p>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 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li> <li>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li> <li>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li> </ol> <p>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p>	<p>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p>	<p>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li> <li>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li> <li>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li> <li>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li> </ol>

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 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p> <p>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으</p>	



	<p>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p> <p>나. 가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p> <p>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li> <li>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li> </ol>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p> <p>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p> <p>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p> <p>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p> <p>6.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p> <p>7. 신청자의 영농의지</p> <p>④ 시·구·읍·면의 장은 영 제7조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지서에 의하며,</p>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① 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② 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p> <p>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p> <p>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숙기, 재배관리 및 수확</p> <p>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p>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발·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인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p> <p>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p> <p>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p> <p>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p>	<p>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p> <p>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p> <p>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p> <p>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p> <p>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p> <p>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p> <p>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p>	

<p>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p> <p>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p> <p>8.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p>	<p>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p> <p>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p> <p>②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li> </ol>	<p>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p> <p>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p>③ 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p>	<p>제10조(농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p>	<p>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 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p> <p>제9조(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10조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p>



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④ 한국농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

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명령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는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p> <p>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p> <p>2. 한국농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p> <p>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p>		

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①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競落人)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한국농촌공사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3.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p> <p>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 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 산관리공사</p> <p>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p> <p>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p> <p>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지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 지의 처분을 한국농촌공사에 위임할 수 있다.</p>	<p>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에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 관을 말한다.</p> <p>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 축은행</p> <p>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 동조합</p> <p>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 금고</p> <p>4.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 수산물유통공사</p> <p>제12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 법 제13 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 지의 저당권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려는 경우</p>	<p>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 영 제12 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 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p>

	<p>에는 농지처분위임증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한국농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p>③ 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려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초 공매예정가격과 수회차(數回次)의 최저공매가격 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p>	<p>또는 임야도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위임증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1조(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처분에 필요한 비용</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농지의 이용</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p> <p>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농지의 이용</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p> <p>제13조(농지이용계획수립 대상에서 제</p>	<p>가. 감정평가료</p> <p>나. 공매공고료</p> <p>다. 명도소송비용 그 밖에 처분에 필 요한 비용</p> <p>2. 수수료</p> <p>가. 농지의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그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p> <p>나.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 금이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에 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 목의 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농지의 이용</p>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의 농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군·구농정심의회(이하 “시·군·구 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의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하 “농지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의 지대(地帶)별·용도별 이용 계획
2.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규모 확

외되는 시·자치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의 농지의 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농지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서 시장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4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대계획</p> <p>3.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p>	<p>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p> <p>3. 농지이용계획안의 개요</p> <p>4.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농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이를 개최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p> <p>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요지 중 비슷한 내용의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일</p>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대로 농지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관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농지이용계획의 고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이용계획의 목적
2. 농지이용계획의 내용
3. 농지이용계획의 내용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시된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도표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⑤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지이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li> <li>2. 농지의 지대구분 및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li> <li>3.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li> <li>4. 농업경영규모확대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li> <li>5. 농지의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항</li> <li>6. 농지의 농업 외 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li> </ol>

<p>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한국농촌공사,</p>	<p>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p>	<p>7. 농지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농지이용실태조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li> <li>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li> <li>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li> <li>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경영체 육성사업</li> </ol> <p>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p>	<p>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li> <li>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li> <li>3.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li> </ol>	

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 농지 임차권 설정, 농지 소유권 이전, 농업경영의 수탁·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기계화·시설자동화 등으로 농산물 생산 비용과 유통 비용을 포함한 농업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농업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업시행자에게 그 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구역</li> <li>2. 농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li> </ol>		<p>로 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자, 임차권을 설정 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할 자에 관한 사항</p> <p>3. 임차권이 설정되는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농지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농지에 관한 사항</p> <p>4. 설정하는 임차권의 내용, 농업경영 수탁·위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p> <p>5. 소유권 이전 시기, 이전 대가, 이전 대가 지불 방법,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p>		<p>②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및 그 지불방법</li> <li>2.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그 지불방법</li> <li>3. 소유권을 이전하는 농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사항</li> </ol> <p>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구구청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계획을 제출 받은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끝난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제17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p>	<p>제17조(등기의 촉탁)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li> <li>2.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내용</li> <li>3.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p>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 등을 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p> <p>② 영 제17조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p>



얻어 해당 농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된 문서 또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와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된 문서(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희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p>	<p>제18조(유희농지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li> <li>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li> <li>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li> <li>4.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li> </ol>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농업·농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p> <p>③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한다.</p>	<p>「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그 밖의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20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p>	<p>제17조(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p>

<p>④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p>	<p>인에게 알려야 한다.</p>	<p>대신할 수 있다.</p> <p>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p> <p>④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p> <p>제18조(토지사용료의 지급) ① 대리경작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토지사용료 100원에 대하여 1년 25원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⑤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p>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해당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2등급의 매입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제19조(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 또는 해지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p>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법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2조(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객토(客土), 깊이갈이 및 경사지토양보전</li> <li>2.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li> <li>3. 화학비료의 합리적인 사용</li> <li>4. 중금속등으로 오염된 농지의 토양개량</li> <li>5. 유기농법 등을 이용한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li> </ol>	



정하는 토양의 개량·보전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의 개량·보전사업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2.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이 불량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것
3. 농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유기농법 등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토양개량·보전사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li> <li>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li> </ol>

<p>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li> <li>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li> <li>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li> <li>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li> </ol>	<p>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p> <p>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p>	<p>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li> <li>2.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li> <li>3.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 불합리한 경계를 시 정하는 경우</li> <li>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li> <li>5.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 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li> <li>6.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li> </ol> <p>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p>	

대(使用貸)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법 제23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② 법 제2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p> <p>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p> <p>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p> <p>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p>	<p>란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를 말한다.</p>	

<p>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p> <p>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2만제곱미터 이내의 것만 해당한다)</p> <p>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p> <p>제24조(임대차 계약 방법과 사용대차 계약 방법)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p> <p>제25조(목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p>		<p>제21조(표준계약서) 농림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다)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p> <p>제26조(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p> <p>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농지의 보전 등</p> <p>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농지의 보전 등</p> <p>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농지의 보전 등</p> <p>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p>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농업진흥지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p> <p>2.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p>	<p>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p>	<p>역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구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3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의</p>

<p>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p> <p>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 시·도지사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p>	<p>확안을 송부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p> <p>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청취 결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li> <li>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li> <li>4. 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li> </ol>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농림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li> <li>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li> <li>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li> <li>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li> </ol> <p>제27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① 법 제30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li> <li>2. 광역시·도 및 시·군·자치구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li> </ol>	

<p>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p> <p>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p>	<p>면적</p> <p>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p> <p>②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p> <p>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p> <p>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p> <p>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p> <p>3.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p>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나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p>	<p>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 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p> <p>2.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p> <p>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p>	



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이용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농막 및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수배출시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p> <p>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樹實)·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p> <p>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p>	

<p>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p> <p>3. 농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p>	<p>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p> <p>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li> <li>2.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老幼者)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li> <li>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li> <li>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운동시설 및 구판장</li> </ol> <p>④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p> <p>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p> <p>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p> <p>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p>	<p>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p> <p>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p>	

-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p> <p>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시설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p> <p>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p>	

	<p>하여 설치하는 시설</p> <p>2. 야생조수(野生鳥獸)의 인공사육 시설</p> <p>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p> <p>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p>	<p>제24조(농업·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 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탈곡장·잠실·애누에공동사육장 및 잎담배건조실</p> <p>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p> <p>3.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인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7.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p> <p>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p> <p>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p>	<p>⑥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및 하천부속물</li> <li>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li> </ol> <p>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li> </ol>	<p>4.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p> <p>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p>



	<p>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p> <p>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p> <p>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p> <p>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p> <p>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p> <p>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p>	<p>제29조제7항제1호에서 “그 밖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수산종묘 배양시설</p> <p>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p> <p>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li> <li>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li> </ol>	<p>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p> <p>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 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li> <li>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다 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li> </ol>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미터 미만인 것

②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 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 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 다목, 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③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서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건축물의 건축</p>	<p>천제곱미터 미만인 것</p>	

-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3. 토지의 형질변경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정비하기 위한 사업
2.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3.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6.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농지의 전용</p> <p>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농지의 전용</p> <p>7. 농산물의 집하장·선과장(選果場), 그 밖의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8.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p> <p>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법 제45조제4항에 따</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농지의 전용</p> <p>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제외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li> <li>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li> <li>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li> <li>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li> </ol>	<p>른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li> <li>2.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li> <li>3.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li> </ol> <p>③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마친 때에는 제1항에</p>	<p>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li> <li>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li> <li>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li> </ol>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제4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④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p>	<p>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p> <p>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p> <p>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영 별 표 2 제17호·제37호·제41호·제42호·제52호·제54호·제57호 및 제58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p>



	<p>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li> <li>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li> <li>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li> <li>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li> <li>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li> </ul> </li> <li>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 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li> </ol> <p>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시</p>	<p>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7조(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p> <p>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 영</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2조(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li> <li>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li> </ol>	<p>제33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li> <li>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li> <li>3. 관할 한국농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만 정한다)</li> </ol> <p>②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p> <p>제29조(농지전용허가) ① 농림부장관이</p>

	<p>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p> <p>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p> <p>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p> <p>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p> <p>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p> <p>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p> <p>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p> <p>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p>	<p>나 영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법 제38조제2항에 따라</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p> <p>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p> <p>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 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p> <p>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p> <p>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p> <p>5. 제3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p>	<p>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및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의 예치를 말한다)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p>

-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 라.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 유지에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p>	<p>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에 관하여는 제32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p> <p>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p>	<p>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p>

<p>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p>	<p>하여야 한다.</p> <p>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2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li> <li>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li> <li>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li> </ol>	<p>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li> <li>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li> <li>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전용협의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li> </ol>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p> <p>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p> <p>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p> <p>7. 제32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제3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만한다.</p> <p>③ 농림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p>	<p>서류</p> <p>③ 관할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p>



<p>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li> <li>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li> <li>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li> </ol>	<p>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1조(농지전용 신고)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li> <li>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li> <li>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li> </ol>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p>	<p>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p> <p>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에</p>

	<p>농지관리위원회(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날(제3항에 따라 신고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p> <p>③ 농지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p> <p>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p>	<p>의한다.</p> <p>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p>	<p>조 및 이 영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p> <p>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p> <p>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p>	<p>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p>

<p>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li> <li>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li> </ol>	<p>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li> <li>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정한다)</li> <li>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li> <li>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li> </ol>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p>	<p>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심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p>

	<p>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li> <li>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li> <li>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li> <li>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li> </ol>	<p>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촌공사의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 또는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p> <p>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p> <p>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력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p> <p>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p>	<p>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p>



	<p>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그 주 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로 한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p>	<p>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 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 지 제27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 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 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p>	<p>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li> <li>2.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li> <li>3.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li> </ol>	

<p>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p>	<p>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p> <p>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p> <p>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7조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p>	<p>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p> <p>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li> <li>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li> <li>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li> </ol>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p>	<p>아니 된다.</p> <p>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p>	<p>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p> <p>③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를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p>	<p>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p> <p>제41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절차 등) 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복구대상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p> <p>② 시장·군수등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p>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 시장·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금·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li> <li>2. 제1호 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li> </ol> <p>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 시장·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p>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①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p> <p>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p>	

<p>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p> <p>②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li> <li>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li> </ol>	<p>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모두 위탁처</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관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p> <p>③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가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나목·사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차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p>	<p>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p> <p>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이 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p>

목·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다목부터 사목까지·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부터 바목까지·아목·자목·카목·타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 목·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호의2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p>	

<p>②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p>	<p>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1조제2항·제62조·제64조·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p> <p>④ 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p> <p>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li>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li> <li>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li> </ol>	<p>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결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결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p> <p>⑥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p>	



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① 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p> <p>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p> <p>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p>	<p>“인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p> <p>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당 인가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법 제38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p>	<p>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p> <p>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과명세</p>

	<p>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및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p>	<p>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호별 공시지가확인서</li> <li>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li> <li>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li> <li>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li> </ol>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                      농림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p> <p>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p>	<p>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 시설물부지의 조서</p> <p>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p> <p>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5조제3항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8.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p>

	<p>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p> <p>3.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농지를 대체 조성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농지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농지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p>	<p>제3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영 제4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li> <li>2.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li> <li>3.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li> </ol>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p> <p>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 건축신고를 수리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p>

		<p>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다.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 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p> <p>4.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 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 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p> <p>5.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날</p> <p>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p> <p>②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p>	<p>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날</p> <p>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①</p>



	<p>① 한국농촌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한국농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p>	<p>한국농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부터 제3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p> <p>② 한국농촌공사는 제1항 및 제44조제4항에 따라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p> <p>③ 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내역통지를 하여야 한다.</p> <p>제42조(납입기간의 연장) ① 영 제4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30일로 한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한국농촌공사는 납입의무자가 제3항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입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p>	<p>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조성비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기간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3조(독촉장 등) ① 영 제49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p> <p>② 관할청 및 한국농촌공사는 별지 제</p>

	<p>1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p> <p>제44조(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 ①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제40조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자진납부서에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② 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 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p>	<p>⑦ 한국농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p> <p>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p>	<p>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p> <p>④ 관할청과 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p> <p>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p>

<p>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li> <li>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li> <li>3. 「관광진흥법」 제53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li> <li>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li> </ol>	<p>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은 해당 전용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은 3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분할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p>	<p>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p> <p>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p> <p>③ 농림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보</p>	

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증서등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한국농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④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li> <li>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li> <li>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li> </ol>	<p>으로 확정된 기관을 말한다.</p> <p>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 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p>	<p>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 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p> <p>②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p>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 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보전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한다.
2.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내야 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⑤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p>	<p>는 그 취소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p> <p>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 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p> <p>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p>	<p>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24호에 따라 사</p>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업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화 단지조성사업</p> <p>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p> <p>7.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조성사업</p> <p>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p> <p>9.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화물터미널사업</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 다만, 관광지조성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스키장건설사업 및 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p>

<p>⑥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⑦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⑧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p>	<p>제53조(부과기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p>	<p>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li> <li>2.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li> <li>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推算價額)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경우</li> <li>4.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제54조(결손처분 등) ① 법 제38조제8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촌공사에 보내야 한다.</p>

<p>⑨ 농림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p>	<p>1. 채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농림부장관이 채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채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p> <p>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38조제8항 본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결손처분하거나 법 제38조제8항 단서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p> <p>제55조(부과·수납업무수수료 등)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p>	<p>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채납정리심의회 의 구성·운영) ① 법 제38조제8항 및 영 제54조에 따른 채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채납정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심의회는 제48조에 따른 채납액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p> <p>④ 심의회 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⑩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제9항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⑪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p>	<p>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p> <p>2. 한국농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p> <p>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p> <p>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① 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p>	<p>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농림부장관에</p>



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금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전용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납입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철회 등) ① 법 제39조제5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5호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li> <li>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li> <li>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li> <li>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 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li> </ol>	<p>제57조(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법 제39조제4호에서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p>	<p>서식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9조제5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관할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지의 표시</li> <li>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li> </ol>

<p>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p> <p>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p> <p>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p> <p>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p>	<p>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li> <li>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li> <li>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li> <li>4.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li> </ol> <p>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① 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li> <li>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li> <li>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li> </ol>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받았거나 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p>	<p>제52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p>

<p>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p> <p>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p> <p>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p> <p>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p>	<p>한다.</p> <p>③ 법 제4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p> <p>2.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p> <p>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p>	<p>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p> <p>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p> <p>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이를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제41조(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다음 각</p>	<p>④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고 별지 제57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不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42조(원상회복 등) ①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li> <li>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li> <li>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li> <li>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li> </ol>		



<p>다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②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서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p> <p>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p>	<p>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을 말한다.</p> <p>②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 영 제60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li> <li>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li> </ol>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p> <p>제44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p>	<p>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p>	<p>3.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분진·매연·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p> <p>③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0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p>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동지역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구(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는 동지역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관할 구역에 농지가 없는 시·구·읍 또는 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과 농지분포 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구·읍 또는 면에 하나의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제61조(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 ①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제45조(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할 시·구·읍·면의 장</li> <li>2. 관할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인 시·구·읍·면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자</li> <li>3. 관할 시·구·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한국농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li> </ol>	<p>제62조(위원의 정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동의 수를 참작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p> <p>②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p>	<p>제54조(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p>

<p>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명</p> <p>③ 위원장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 농지의 면적이 넓은 시·구·읍·면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p> <p>④ 위원장은 제46조제3호에 따른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p>⑤ 위원의 임기·선임·해임,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직·회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관련기관및단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를 말한다.</p> <p>제63조(위원의 임기)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64조(위원의 선임)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위원은 리·동의 주민의 사를 대</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p> <p>제65조(위원의 해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5조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li> <li>2. 질병·징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li> <li>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li> <li>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법 제45조제4항에 따른</li> </ol>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6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농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li> <li>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li> <li>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과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li> <li>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68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46조제4호에서 “농지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li> <li>2.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li> </ol>	



<p>제47조(경비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4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2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p>	<p>에 관한 확인</p> <p>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p> <p>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p> <p>② 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시·구·읍·면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의 열람·복사,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6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p> <p>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p>	<p>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li> <li>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li> </ol> <p>②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p>	<p>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정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p>

<p>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 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p> <p>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p>	<p>할 수 있다.</p> <p>② 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농지원부의 작성·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p> <p>⑤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li> <li>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li> </ol> <p>제57조(농지원부파일의 정리·보관 등)            ① 농지원부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p>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농지원부 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원부 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 파일은 멸실·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농지원부 파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구·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② 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한다.</p> <p>③ 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p> <p>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① 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p>

### 제5장 보칙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촌공사, 농업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71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 제5장 보칙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p> <p>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p> <p>3.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p> <p>4.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p>	<p>6.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대장</p> <p>7.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p> <p>8.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 변경승인대장</p> <p>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 발급대장</p> <p>10.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p>



제2호·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p> <p>가. 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p> <p>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p> <p>다. 농림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p>	

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의 전용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p> <p>나. 법 제38조제1항제2호·제5호에 따른 자의 경우</p> <p>다.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 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 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p>	<p>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제52조(포상금)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 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 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허가를 받은 자</p> <p>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p> <p>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p> <p>6.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p> <p>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①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p>	<p>로 정한다.</p> <p>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p> <p>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p>	<p>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p>

할 때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법인
2. 농지의 위탁경영자
3. 농지의 임대인
4. 농지의 사용대주(使用貸主)
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6.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p> <p>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55조(청문)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p> <p>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p> <p>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제74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p>	<p>제63조(증표)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li> <li>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li> <li>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li> <li>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li> <li>5. 제50조에 따라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li> </ol>	<p>의 신청 : 1천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li> <li>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li> </ol> </li> <li>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li> <li>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li> </ol> </li> </ol>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5천원</p> <p>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p> <p>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교부신청 : 1천원</p> <p>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 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 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 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 제6장 벌칙

제57조(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이하 “토지가액(土地價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土地價額)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li> <li>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li> <li>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li> </ol> <p>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li> </ol>		

<p>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p> <p>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p> <p>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p> <p>2. 제23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자</p> <p>제6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p> <p>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6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p>	<p>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③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촌공</p>	<p>제64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p>

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

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p> <p>⑧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반기별 현황을</p>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처분명령
2.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3. 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② 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연간 발급실적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호, 부칙 제15조제28항·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④ 한국농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2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3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p>

<p>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9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p> <p>제3조(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한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제6조제1항·제10조·제11조·제23조 및 제62</p>	<p>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② 별표 2 제2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③ 별표 2 제3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④ 별표 2 제3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⑤ 별표 2 제4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	-------------------------------------------------------------------------------------------------------------------------------------------------------------------------------------------------------------------------------------------------------------------------------------------------------------------------------------------------------------------------------------------------------------------------------------------------------------------------	---------------------------------------------------------------------------------------------------------------------------------------------------------------------------------------------------------------------------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조는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되,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처분 기한 및 협의매수 등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3에 따른다.</p> <p>②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제7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p> <p>제5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p>	<p>⑥ 별표 2 제4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⑦ 별표 2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p> <p>⑧ 별표 2 제5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⑨ 별표 2 제5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p>	

농업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자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받은 농지는 이 법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

⑩ 별표 2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허가협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농지의 범위에서 농축산물 생산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의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획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이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p> <p>제7조 (농지조성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데에 필요한 금액을 낸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것으로 본다.</p>	<p>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7조(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2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②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고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농지별 단위당 금액은 이 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

제8조(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54호 농지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9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8조(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p> <p>제9조(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지원부는 이 법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p> <p>제10조(농지분할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793호 농지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농지분할을 신청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p>	<p>것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0조(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는 이 영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p> <p>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p>	



분할을 수반하는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농지분할에 대하여서는 제2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04호 농지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농지의 정의에서 농축산물 생산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7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 :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밖 :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을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지방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서는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2호”로 한다.</p> <p>③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57조”를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p> <p>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36조 내지 제48조·제53조·제56조·제57조 및 제65조”를 “「농지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34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로 한다.

②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③ 骨材採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 第1項”을 “「농지법」 제34조 제1항”으로, “同法 第38條 第1項”을 “같은 법 제36조 제1항”으로 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⑤ 公有水面埋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항제1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⑥ 科學館育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5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⑦ 交通體系效率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3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⑧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  
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  
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  
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 제1  
항”으로 한다.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가목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제61조제1항제5호 및 제9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제37조”를 각각 “제35조”로, “제38조”를 각각 “제36조”로 한다.</p> <p>⑪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⑫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p> <p>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제13조제3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農地法 第37條 또는 第45條”를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農地法 第30條”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⑮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⑯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제5조제4항제6호 중 “農地法 第36條 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p> <p>⑰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7호 중 “農地法 第36條 第1項”을 “「농지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p> <p>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1호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p> <p>⑲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4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同法 第37條”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p>		



- ⑳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㉑ 農地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 ㉒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 ㉓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㉔ 貿易去來基盤造成에 관한法律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農地法 第40條”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p> <p>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 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 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㉖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第40 條”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p> <p>㉗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3호 중 “농지법 제38조”를</p>		

“「농지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㉘ 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을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㉚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農地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同法 第37條第1項·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申告 및 同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의 승인”을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으로 한다.</p> <p>제13조의5제1항 후단 중 “「농지법」 제44조”를 “「농지법」 제42조”로 하고, 제6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p> <p>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p> <p>㉒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p>		

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㉓ 送油管安全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農地法 第36條  
第1項”을 “「농지법」 제34조 제1항”  
으로 한다.

㉔ 首都圏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  
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㉕ 법률 제8180호 수목원조성 및 진  
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㉖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제17조제2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 제1항”을 “「농지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p> <p>㉞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2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㉟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1항제13호 중 “농지법 제33조제1항”을 “「농지법」 제31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p>		

㉟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㊲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㊳ 沿岸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㊴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 제1호가목 중 “農地法 第36條 第1項”을 “「농지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p> <p>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 중 “農地法 第36條”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별표 1 제6호타목 및 제9호가목 중 “農地法 第36條 第1項”을 각각 “「농지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p> <p>별표 1 제10호라목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⑤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p>		



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④⑥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

④⑦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

④⑧ 자연재해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④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6호 중 “「농지법」 제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p> <p>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p> <p>㉕ 電源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1항제10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㉖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2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p>		

제1항”을 “「농지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

제205조제1항 중 “「농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33조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법」 제32조제3항”을 “「농지법」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308조 본문 중 “「농지법」 제21조제2항”을 “「농지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㉔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⑤④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⑤⑤ 주한미군기지이전예따른평택시등 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⑤⑥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p>		

㉟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지법」 제22조”를 “「농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지법」 제38조제1항”을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지법」 제39조”를 “「농지법」 제37조”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농지법」 제33조”를 “「농지법」 제3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⑤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9조제1항제11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p> <p>⑥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⑥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 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⑥2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0조제6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p>		

⑥③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同法 第37條”를 “같은 법 제35조”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법 제36조”로, “同法 第42條”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⑥④ 土地環境保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⑥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71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1항”을 “「농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2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한다.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별표의 연번란 73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로 한다.</p> <p>⑥ 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⑦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⑧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1항제10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同法 第38條”을 “동법 제36조”로 한다.</p>		



⑥9 學教施設事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

⑦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0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⑦1 韓國가스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1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⑦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 및 제34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第40條”를 각각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42조 중 “「농지법」 제9조 및 제26

농 지 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p>조”를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로 한다.</p> <p>제50조제1항 중 “「농지법」 第46條”를 “「농지법」 제44조”로 한다.</p> <p>㉓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㉔ 韓國土地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9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 第1項”을 “「농지법」 제34조 제1항”으로 한다.</p> <p>㉕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6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p> <p>㉖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p>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㉞ 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농지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 모	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농업인과 농업법인	터 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천 제곱미터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주택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 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업인 : 세대당 1천 500제곱미터 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천 제곱미터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 농업인 : 세대당 1천 500제곱미터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법 제32조	제한없음	제한없음

<p>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p> <p>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p> <p>나.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p> <p>다.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p> <p>라. 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장</p> <p>7.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p> <p>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p>	<p>비영리법인</p> <p>제30조제4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p>	<p>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p> <p>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p>	<p>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p>	<p>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수산업법」 제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p> <p>제29조제4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수산업법」 제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p>	<p>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p>
----------------------------------------------------------------------------------------------------------------------------------------------------------------------------------------------------------------------------------------------------------------	----------------------------------------------------------------------	------------------------------------------------------------------------	---------------------------------------------------------------------	------------------------------------------------------------------------------------------------------------------------------------------------------------	-------------------------------

<비 고>

1. 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시설 및 설치자의 범위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시설 및 설치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에 한하며, 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3.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9호의 시설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단위 : 퍼센트)

감 면 대 상	감 면 비 율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1.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그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시설을 제외한다)	100	100	6.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부속물	100	100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등 국토보존시설	100 10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100	100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방·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100	100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에 한한다)	0 100
5.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에 한한다)	100	100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0 100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0 100

12.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생활 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용지	100	100			
14.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오지개발사업용지	100	100			
15.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조사·고시된 한계농지 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한계농지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7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0	100	18. 초지조성용지	100	100
16.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어업인주택(농업진흥구역 밖의 해당 주택을 포함한다)	100	100	19.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00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해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	100	100	20.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	100	100
			21. 농업용시설(농산물·임산물·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기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료·농약·종자·농기구등 농업자재의 생	100	100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	

산 및 보관시설,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종묘생산 및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양어·양식 또는 수산종묘생산에 직접 필요한 어업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00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100	24.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23.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에 따른	100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50으로 한다)	100	2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100	100
			2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되는 종합유통센터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시설	50	100	3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50 (3천3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28.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50	100	32. 국방·군사시설	50	100
29.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남은 음식물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천3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33.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수도권신 공항건설 사업 중 배후지원 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50 (수도권신 공항건설 사업 중 배후지원 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30. 「종자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제2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3천3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00	34.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시설	50	50

35.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시설		
3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및 「사회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교육시설과 농촌(「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100	100	41.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100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다목 제12호에 따른 연수·수련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50	가.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0	50
38.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50	50	나.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50	50
39. 식물원의 부대시설	50	50	42.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민간보육시설(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	50	50	43.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	50	50

<p>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p>					
<p>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p>	50	50	4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0	50
<p>45.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p>	0	50	4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0	50
			4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0	50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0	50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4.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 용지(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50
50.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아목·차목 또는 타목 내지 거목의 시설	50	50	5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주된 사업의 부지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50	50
51.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5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단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화물터미널·창고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단지		
52.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생산의 촉진을 추진하는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주택 및 복지후생시설(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0	50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으로 확정된 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0	100
5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나. 가목에 따른 자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창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0	50

<p>5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산림(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0</p>	<p>100</p>	<p>60.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 2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0</p>	<p>50</p>
<p>58.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 주택(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0</p>	<p>50</p>	<p>&lt;비 고&gt;</p>		
<p>59.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p>	<p>0</p>	<p>100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50으로 한다)</p>	<p>1. 시설구분 제21호·제23호·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협의요청일·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p> <p>시설의 농지전용면적 =</p> $\text{전체 농지전용면적} \times \frac{\text{해당 시설의 바닥면적}}{\text{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별표 3】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근거법률	지역 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40조의2	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3.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	유통단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3조	도시계획시설예정지(도시지역 밖에 한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7.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구역
8.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국민임대주택단지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경제자유구역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11.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지·관광단지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지급 기준(건당)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법 제52조 제1항	10만원
2. 법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법 제52조 제2항	30만원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법 제52조 제3항	50만원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 제4항	10만원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법 제52조 제4항	50만원
6.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에 사용한 자	법 제52조 제5항	30만원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 제6항	30만원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2조 관련)

구 분	기 준
1. 공 통 사 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2. 객 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당해 농지에 경작·재배중인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 토	가. 연접토지 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4. 절 토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별표 2】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구 분	범 위
공 공 단 체	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6.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한정한다) 7.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농업생산자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농업연구기관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자재 등의 개발·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종자생산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종자사업자 및 그 단체
농업기자재의생산자	1.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비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그 단체 3.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별표 3】

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

배출시설	참고사항	
	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1100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 포함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1820 1910	- 18201, 19101 원모피· 원피가공시설 포함			제, 저유소에 한함 - 가스회수·탈염·탈황· 탈납·스트리핑·스테빌 라이즈·개질·접촉분 해·수침 분해·이성 화·알킬화·중합시설 포함
6. 신발제조시설	1930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2100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00 7491	- 치과용 X-ray, 수표촬영 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 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 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 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 계, 사이크로핵산계, 아세 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 초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 조시설	2310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 압·강압), 석유전화(분 해·개질) 석유정제, 윤 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 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 물 제조시설	24113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 물 제조시설	24119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 회, 가성소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 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 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 시설 포함	21.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 제제 제조시설 포함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 약 제조시설	2431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밖에 착색제 제조시설	24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 시설 포함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 사제품 제조시설	2432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 조시설	2414		24. 계면활성제·치약·비 누 및 그 밖의 세제 제 조시설	24331 24332	
19.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 체 제조시설 포함	25.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 체 제조시설 포함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 향제 제조시설	24334	- 왁스 제조시설 포함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 광재료 제조시설	24341 24342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 설 포함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 시설	24391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 조시설	24392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 시설	24393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 시설	24394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27221	
32. 그 밖에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9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00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2729	
35.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43. 금속 주조시설	2730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 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 포함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37.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시설	3130		51.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511	-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제외
46.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	3140		52.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 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제외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 시설	3150		53. 세탁시설(용적 2m <sup>3</sup> 이상 또는 용수 1m <sup>3</sup> /시간 이상)	93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제조시설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 m <sup>3</sup> /시간 이상)	공통 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3230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포함			

<p>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p>	<p>공통 시설</p>	<p>정·용축수를 해당 처리 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p> <p>-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 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외</p> <p>- 실험생산시설 포함</p>			<p>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p> <p>-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 제외</p>
<p>56. 도금시설</p>	<p>공통 시설</p>	<p>-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p>	<p>※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p>		
<p>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p>	<p>공통 시설</p>	<p>-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포함</p> <p>-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p>			



# 「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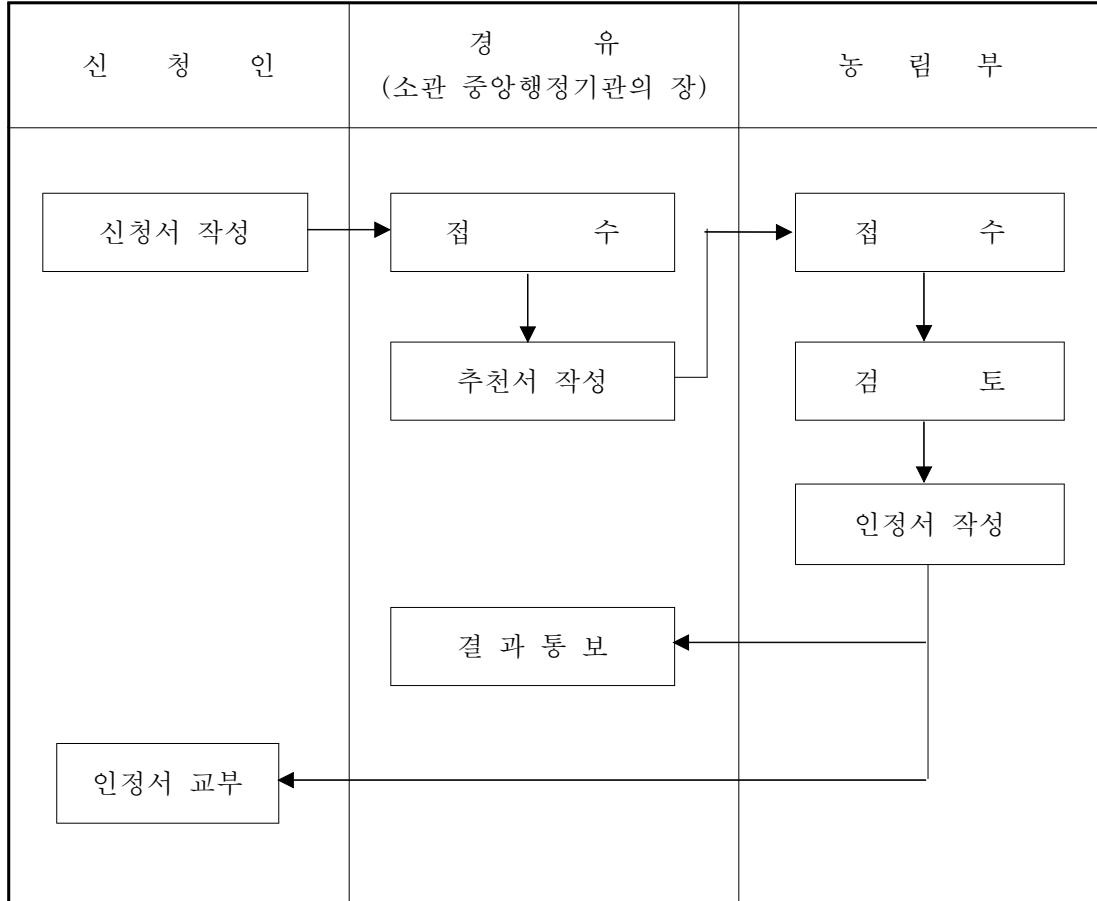


농지취득인정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 )
	주 소			
취득하려는 농지 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시·군	읍·면	리·동		
취득목적				
<p>「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농 립 부 장 관 귀하</p>				
구비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li> <li>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li> <li>3.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li> <li>4.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지적도등본</li> <li>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li> <li>2. 토지(임야)대장</li> </ol>	없 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210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h2 style="margin: 0;">농 지 취 득 인 정 서</h2>							
1. 성 명 (명 칭)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주 소							
4. 취 득 농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m <sup>2</sup> )	비 고
시·도	시·군	읍·면	리·동				
합 계				/	/		
5. 취 득 목 적  6. 취 득 조 건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에 기재 한 농지의 취득을 인정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농 림 부 장 관 □□인                 </div>							

210mm × 297mm(인쇄용지(2급) 60g/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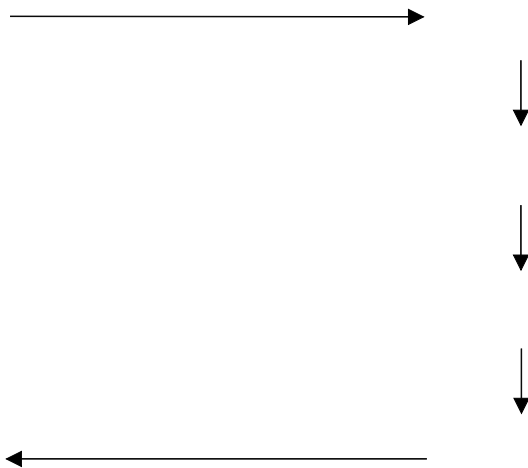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접 수 *	. . . 제 호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처 리 *	. . . 제 호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취득자의 구분					
	③주 소	시 구 동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농업인	신규 영농	법인등	주말 체험 영농		
	④연락처	⑤전화번호							
취 득 농지 의 표 시	⑦소 재 지			⑪농지구분					
	시·군	구·읍·면	리·동	⑧지번	⑨지목	⑩면적 (㎡)	진흥 구역	보호 구역	진흥 지역 밖
⑫취득원인									
⑬취득목적	농 경 업 영	농 지 전 용	시 험· 구 · 실 습 등 용			주 체 영	말 험 농		
<p>「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li> <li>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li> <li>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li> <li>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li> </ol>			법인등기부등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p>※ 기재상 주의사항</p> <p>* 란은 신청인이 쓰지 않습니다.</p> <p>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p> <p>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p> <p>⑥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합니다.</p> <p>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p> <p>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 영농”</p> <p>다.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p> <p>라.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p> <p>[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p> <p>⑨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p> <p>⑪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p> <p>⑫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p> <p>⑬란은 농업경영/농지전용/시험·실습·종묘포/주말체험·영농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징역·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p>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구·읍·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신청서 작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접 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확인·조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검 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교 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00px; margin: 0 auto;">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div>

농업경영계획서										
취득대상농지에 관한 사항	①소재지			②지번	③지목	④면적 (㎡)	⑤영농거리	⑥주재배예정작목	⑦영농착수시기	
	시·군	구·읍·면	리·동							
	계									
농업경영노동력의 확보 방안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농업기계·장비의 확보 방안	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기계·장비의 확보 방안	⑩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농업기계·장비의 확보 방안	⑪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기계·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⑫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p>「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

(뒤 쪽)

⑬소유농지의 이용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m <sup>2</sup> )	주재배 작 목	자 경 여 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⑭임차(예정)농지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m <sup>2</sup> )	주재배 (예정) 작 목	임 차 (예정)여 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⑮ 특 기 사 항								
<p>※ 기재상 주의사항</p> <p>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p> <p>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식재하려는 작목을 씁니다.</p> <p>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예정시기를 씁니다.</p> <p>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 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려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 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p> <p>⑨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p> <p>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p> <p>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려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p> <p>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 란에 위탁하려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10%), 약제 살포(20%) 등]</p> <p>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p> <p>⑩란과 ⑪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p> <p>⑫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p> <p>⑬란과 ⑭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p> <p>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씁니다.</p>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농지취득자격</span> <div style="text-align: right;"> <input type="checkbox"/> 증 명  <input type="checkbox"/> 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                     </div> </div>				
농지취득자 (신청인)	성 명 칭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시 구 동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연 락 처		전 화 번호	
취 득 농지의 표 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m <sup>2</sup>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 반려				
신청서 반려사유				
취 득 목 적				
귀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 <input type="checkbox"/> 증명을 발급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input type="checkbox"/> 증명신청서를 반려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 <span style="float: right;">인</span> </div>				
<유의사항> ○ 귀하께서 해당 농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취득한 해당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 제1항 및 제62조에 따라 해당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6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접수일자 (접수번호)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신 청 인			신 청 농 지				취득 목적	비고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리·동, 번지)	소 재 지 (리·동)	지 번	면적(m <sup>2</sup> )			
								논	밭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70g/m<sup>2</sup>)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h2 style="margin: 0;">농지처분의무통지서</h2>							
1. 성명(명칭) 2.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주소 4. 처분대상 농지 및 그 면적(아래 농지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중 m <sup>2</sup>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m <sup>2</sup> )	비 고
시·도	시·군	읍·면	리·동				
합 계	/	/	/	/	/		
5. 처분의무 발생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1년)				
6 처분의무기간 및 기한							
귀하는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소유농지 중 처분대상농지를 처분의무기간에 처분하여야 함을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알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span style="float: right;"><input type="checkbox"/> 인</span>							
※ 안내말씀 1. 이 통지서에 따라 처분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2. 이 통지서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10mm × 297mm(인쇄용지(2급) 60g/m<sup>2</sup>)

[별지 제8호서식]

농지매수청구서					
매수 청구인 (농지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매수를 청구하는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이용현황
1					
2					
3					
매수를 청구하는 농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권리의 종류	권리의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					
2					
3					
매수를 청구하는 농지에 설치된 농업용시설에 관한 사항					
번호	시설의 종류	시설의 개요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사항		
1					
2					
3					
처분명령일		년 월 일	처분명령기관		
「농지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한국농촌공사 사장		귀하	매수청구인	서명□인	
구비서류	청구인 제출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처분명령서의 사본 1부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97mm × 210mm(신용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농 지 처 분 위 입 증 서

아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은 위임자가 농지저당기관으로서 「농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자는 한국농촌공사에 처분을 위임할 것을 확약하고 한국농촌공사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명 칭				□□①

수임자	주 소				
	한국농촌공사 사장				
	위 대리인				□□①

### ① 처분위임 농지의 표시

소    개    지	지    번	지    목	면    적(m <sup>2</sup> )	소    유    자

### ② 매각에 관한 사항

감 정 평 가			명 도 책 임	매각에 관련된 중 요 사 항
일    자	감정평가액(원)	감정기관		
			<input type="checkbox"/> 매도인 <input type="checkbox"/> 매수인	
첨 부 서 류	위임인 제출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위임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 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1.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2. 해당 농지의 토지대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97mm × 210mm(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10호서식]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른				<input type="checkbox"/> 소유권이전 <input type="checkbox"/> 임차권설정	동의서	
1. <input type="checkbox"/> 소유권이전 <input type="checkbox"/> 임차권설정 대상농지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면 적(m <sup>2</sup> )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농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위에 표시한 농지의 <input type="checkbox"/> 소유권이전 <input type="checkbox"/> 임차권설정 에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년      월      일                 </div>						
2. 동의자						
<input type="checkbox"/>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임차권을 설정하는 자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input type="checkbox"/>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 <input type="checkbox"/> 임차권을 설정받는 자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시행자)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b>유희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b>						
1.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농지의 소유권자(임차권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2. 농지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m <sup>2</sup> )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3. 대리경작자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간)					
4. 대리경작자 지정사유						
1. 귀하가 소유하고(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위 목록의 농지는 「농지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희농지에 해당됩니다.  2. 이에 「농지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 목록의 농지를 경작할 대리경작자를 따로 지정하여 경작하게 할 것임을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예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span style="float: right;">인</span> </div>						
※ 이 예고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예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리경작자지정이의신청서에 따라 이 예고를 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인쇄용지(2급) 60g/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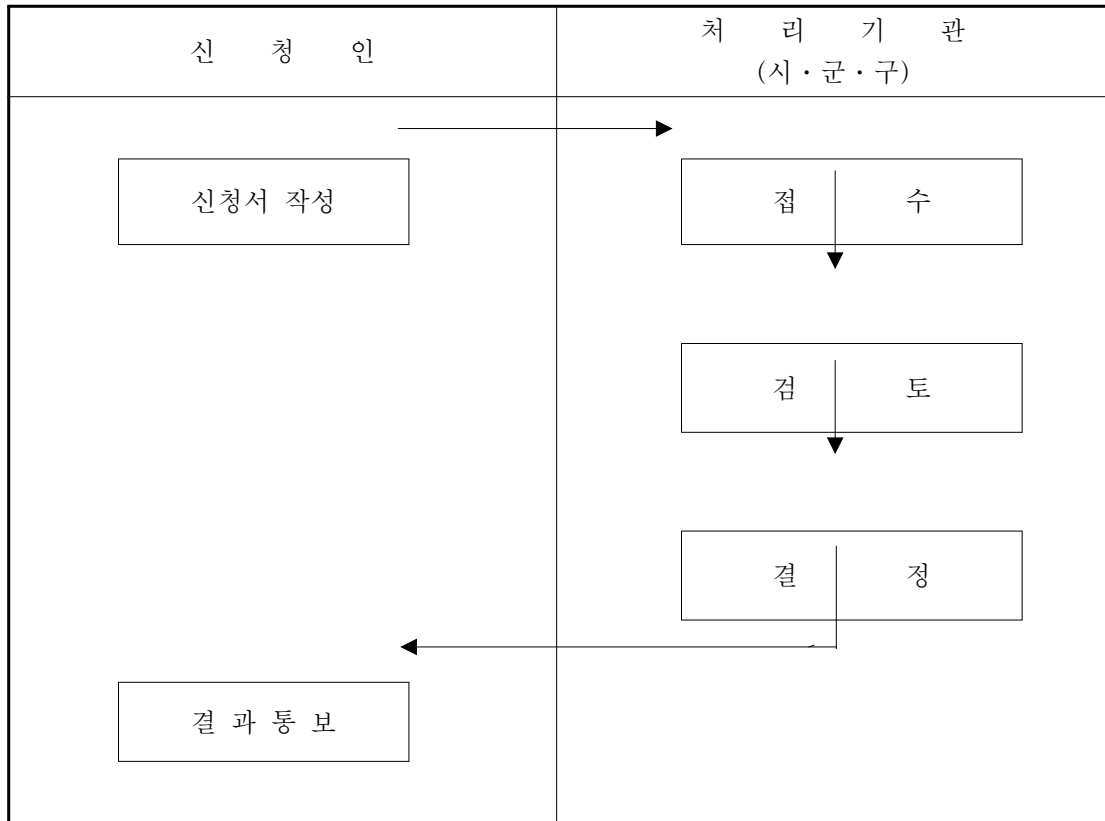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귀 하						
「농지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였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1. 농지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m <sup>2</sup> )	소유권자 (임차권자)
시·군	읍·면	리·동				
2. 대리경작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3. 경작기간 및 사용료						
경작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			
사 용 료	원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뒤 쪽)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지전용 <input type="checkbox"/> 허가 <input type="checkbox"/> 변경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시·군·구 : 10일 시 · 도 : 20일 농 립 부 : 33일	
신 청 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 편 물 수 령 지	(전화 : )				
전용하려는 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계(m <sup>2</sup> )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m <sup>2</sup> (농업진흥지역) m <sup>2</sup>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 용 목 적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립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시장·군수·자치기구청장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 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 본 또는 입야도등본과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 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기구 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 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 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합니다) 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영 별표 2 제17호·제37호·제 41호·제42호·제52호·제54호·제57호 및 제58호에 따라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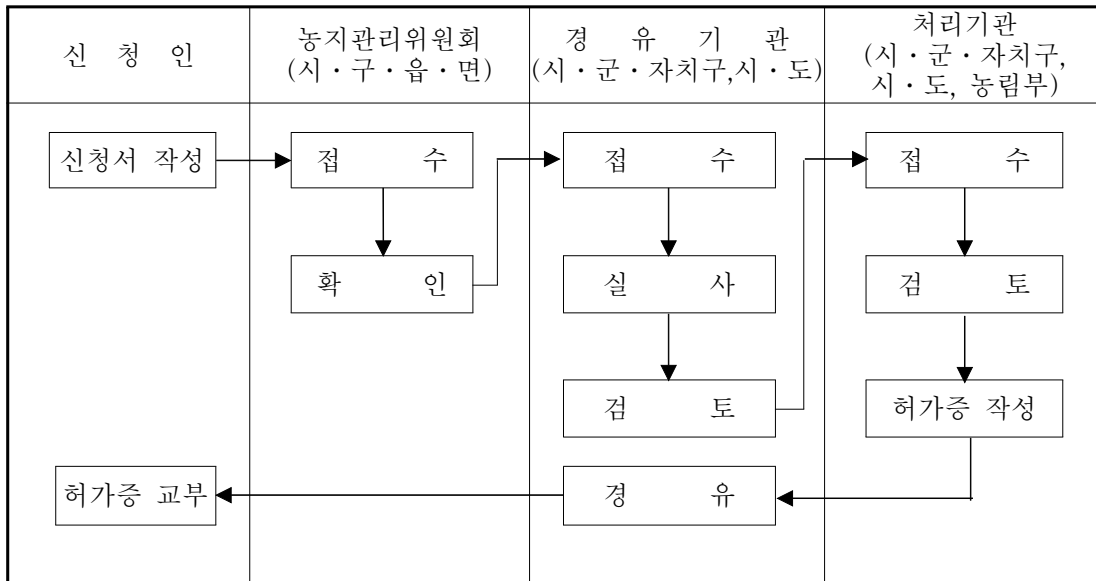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 × 297mm(인쇄용지(특급)70g/m<sup>2</sup>)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시·도지사	농림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

[별지 제15호서식]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 허가·협의 □ 신고)

신청사항	성명 (명칭)	주소						
	신청지	소재지	번지의 필지					
		면적 (㎡)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지합계	비농지	총부지 면적
			진흥지역안의 토지					
	사업 계획	전용목적 (용도)						
	공사계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확인사항				확인결과			비고	
확인기준 에 대한 의견	허가· 협의	농지의 정비상태	①경지정리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	미정리	정리			
			②수리시설 등 생산기반 정비 여부	미정비	정비			
	허가· 협의· 신고	피해방지 계획의수 립(토사 유출, 폐수 배출, 악 취발생, 일조·통 풍·통작 에의영 향 등)	③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미수립	수립			
			④농어촌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 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미수립	수립			
			⑤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의 여부	미수립	수립			
	용수의 취 수로 인한 피해		⑥농수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없음	적음	많음		
			⑦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없음	적음	많음		
특기사항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 기재요령 1. 농지전용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확인을 생략합니다. 2.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3.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10mm × 297mm(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6호서식]

농지 전용 심사의견서										
신청사항	성명				주소					
	신청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면적 (㎡)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지합계	비농지	총부지적		
		진흥지역안의 토지								
사업계획	전용목적 (용도)									
	공사계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심사사항					의견			의견결정이유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	용도구역행위제한	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	저촉없음		저촉					
		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	저촉없음		저촉					
	농지전용의 적정성	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있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절한 면적인지 여부	적정		부적정					
	전용농지의 보전 필요성	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미정비		정비					
		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분산		집단화					
		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낮음		높음					
		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	낮음		높음					
		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	낮음		높음					
			종합의견			불필요		필요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토사유출, 폐수배출, 악취발생, 일조·통풍·통작에 영향 등)	⑩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⑪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⑫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종합의견			적정		부적정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 정도	⑬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⑭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종합의견	적합(일부적합)									
	부적합									
					년 월 일					
시·도지사			조사자 직			성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담당과장 확인 직			성명		인		
기재요령	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전용신청자 주소·성명:

아래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원

토지소재지				지목	농지 구분	①전용 면적(m <sup>2</sup> )	②개별 공시지가 (원/m <sup>2</sup> )	토지가액(원) (①×②)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농지전용허가대장									
허가번호및일자	제 호 ( 년 월 일)				수수료				
신청자 (허가받을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농지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외 필지
전용목적						총부지면적	m <sup>2</sup>		
구분	전용신청면적(m <sup>2</sup> )				전용허가면적(m <sup>2</sup> )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합계									
전용예정시기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허가조건									
허가의취소 변경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	부과결정서 통지상황	부과결정금액 : 원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납부근거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비고									

297mm × 210mm  
(인쇄용지(특급) 70g/m<sup>2</sup>)

(뒤 쪽)

허 가 농 지 명 세											
리(동)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m <sup>2</sup> )	리(동)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m <sup>2</sup> )

297mm × 210mm  
(인쇄용지(특급) 70g/m<sup>2</sup>)









일련번호 _____ <b>농지전용협의대장</b>									
사업시행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협의요청기관					경유기관				
문서처리	접수	문서번호: ( 년 월 일)			사업시행근거 (법령 및 사업명)				
	발송	문서번호: ( 년 월 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 등의 결정번호 및 일자					( 년 월 일)				
농지소재지	번지 외 필지( 지역 지구)								
전용목적					부지의 총면적	m <sup>2</sup>			
구분	농지전용협의요청				동의				
	계 (m <sup>2</sup> )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계 (m <sup>2</sup> )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합계									
전용예정시기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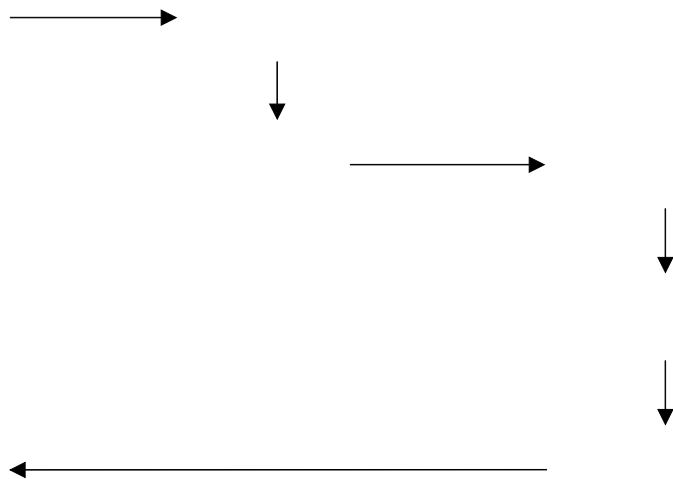
297mm × 210mm  
(인쇄용지(특급) 70g/m<sup>2</sup>)

(뒤 쪽)

동 의 조 건											
동의를 취소·변경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				부과결정서 통지상황		부과결정금액 : 원					
				납부근거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비 고											
동 의 농 지 명 세											
리(동)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m <sup>2</sup> )	리(동)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m <sup>2</sup> )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m <sup>2</sup>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목별 경영규모(m <sup>2</sup> )					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젓소	돼지	닭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고인	농지관리위원회	처리기관(시·군·구)
신고서 작성	접 수	
	확 인	접 수
		검 토
신고증 교부		수 리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농 지 전 용 신 고 대 장									
신고번호 및 일자	제 호 ( 년 월 일)				수수료				
신고자 (전용하는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농지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외 필지
전용목적					총부지면적 (㎡)				
구 분	전용신고면적 (㎡)				전용신고수리면적 (㎡)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합 계									
전용예정시기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신고수리조건									
신고의철회사항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	부과결정서 통지상황	부과결정금액 : 원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납부근거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비 고									

297mm × 210mm  
(인쇄용지(특급) 70g/㎡)



(뒤 쪽)

신 고 농 지 명 세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리(동)	지번	지목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297mm × 210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4호서식]

농지전용신고증										
신고수리번호			제 호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용 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용면적(m <sup>2</sup> )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	비 고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input type="checkbox"/>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input type="checkbox"/> 「농지법」 제43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m <sup>2</sup> )	농업진흥지역 용 도 구 분	전용면적 (m <sup>2</sup> )			
시·군	읍·면	리·동								

「농지법 시행령」 제35조(또는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 × 297mm(인쇄용지(특급) 70g/m<sup>2</sup>)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10일	
신 청 인	성 명 ( 명 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m <sup>2</sup> )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m <sup>2</sup> (농업진흥지역 : m <sup>2</sup>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기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에 한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 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 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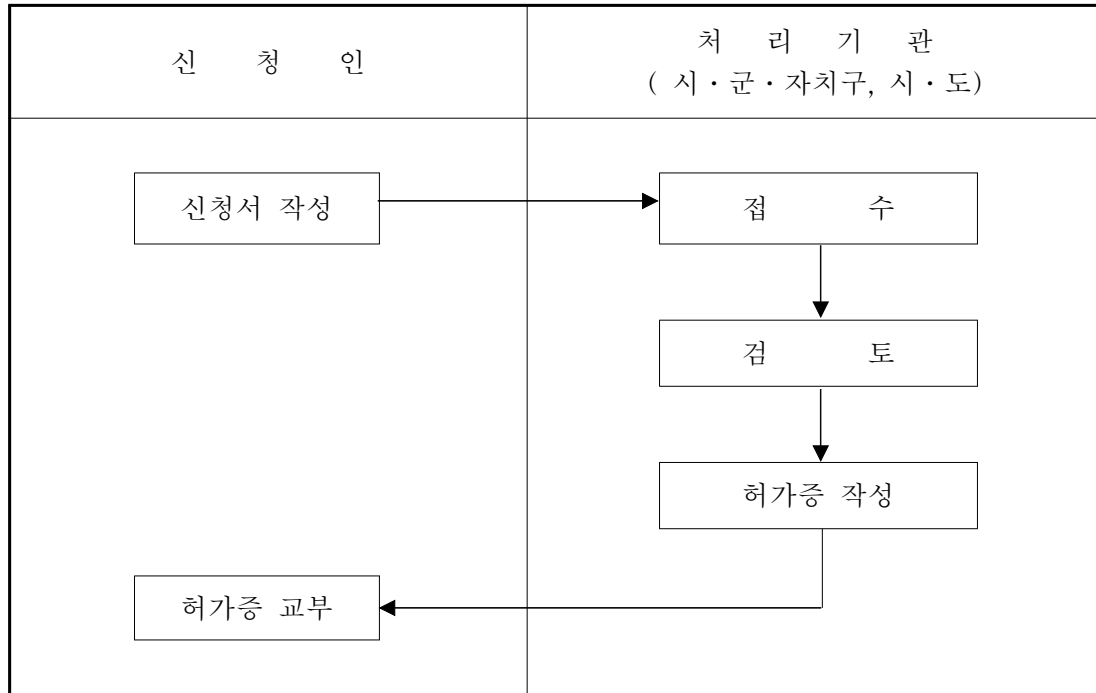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채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허가 번호	허가 증 급 자	신 청 인			일시사용허가면적 (㎡)						사 용 적	허가 기간	복구비용		복구 일자
		성 명 (명칭)	주민등록 번호 (법인등록 번호)	주 소	농 지 소재지	진 흥 지역 용도 구분	계	답	전	농지 개량 시설 부지			예 치 일자 및 금액	반 환 일자 및 금액	

364mm × 257mm  
(인쇄용지(특급) 70 g/㎡)

[별지 제27호서식]

제 호  <b>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b>							
1. 성 명 (명칭) : 2. 주민등록번호 : 3. 주 소 : 4. 타용도 일시사용농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시·군	읍·면	리·동					
5. 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6.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7. 허 가 조 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사업시행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자 하는 농지	소재지				
	구분	계 (m <sup>2</sup> )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m <sup>2</sup> (농업진흥지역 : m <sup>2</sup> )				
타용도일시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업시행 근거 법령 및 사업명 :					
타용도 일시사용 목적					
<p>「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협의요청기관장 □□인</p> <p>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p>					
<p>※ 구비서류</p> <p>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p> <p>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p> <p>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p>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m <sup>2</sup>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m <sup>2</sup>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별지 제29호서식]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일련 번호	접수 월일	협의 요청 기관	처리 연월일	주된 인·허가 및 결정 등의 연월일 및 근거	주된 인·허가등의 신청인			일시사용면적 (㎡)						사용 목적	일시 사용 기간	복구일 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 번호 (법인등록 번호)	주소	농지 소재지	진흥 지역 용도 구분	계	답	전	농지 개량 시설 부지			

364mm × 257mm  
(인쇄용지(특급) 70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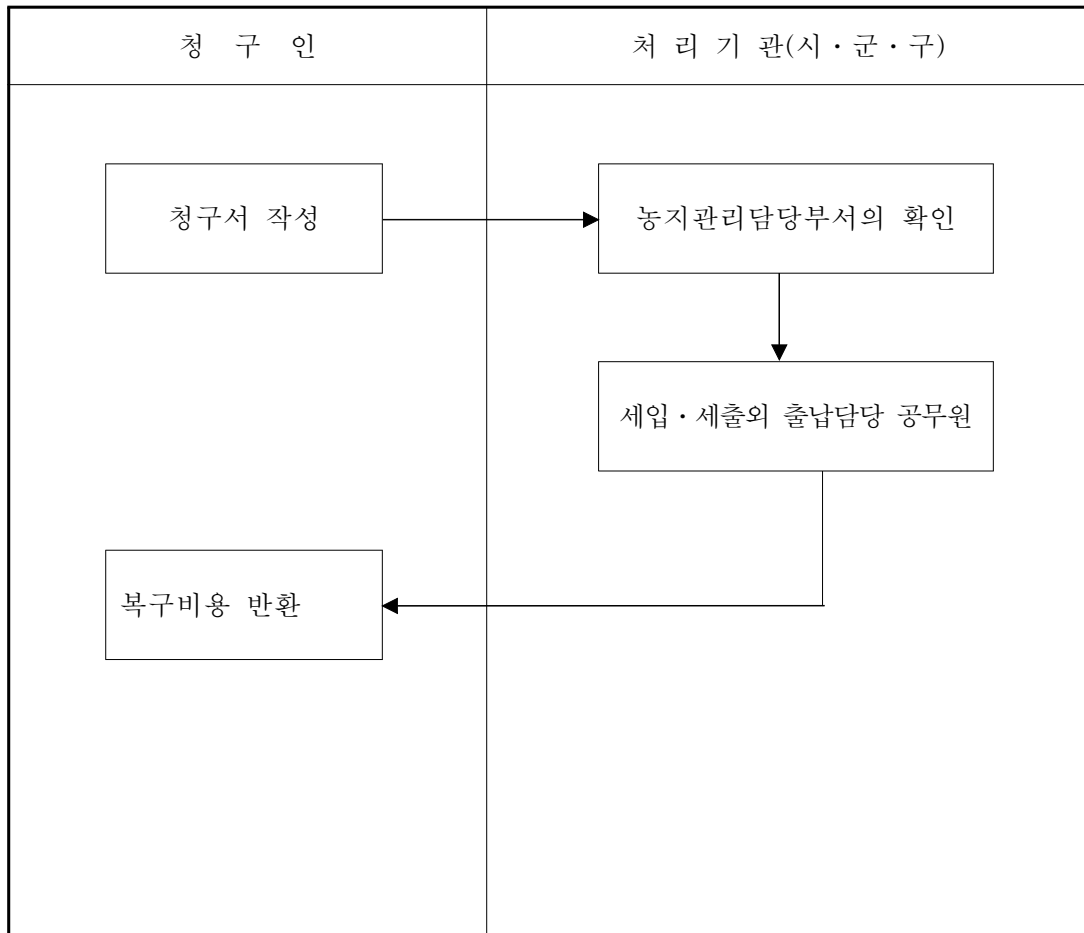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b>복구비용반환청구서</b>					처 리 기 간	
					10일	
청 구 인	성명(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타용도 일시 사용한 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면 적 계	m <sup>2</sup>	답	m <sup>2</sup>	전	m <sup>2</sup>
허 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농지로의 복 구 일	년	월	일	허가증번호		제 호
복 구 비 용	원			예 치 방 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보험증권
<p>「농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청구인 (서명 또는 인)</p>						
농 지 관 리 담당부서의 확 인	<p>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5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50px;">조 사 자 직 성명 <input type="checkbox"/>①</p> <p style="margin-left: 50px;">담당과장 직 성명 <input type="checkbox"/>①</p>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수 수 료	
※ 구비서류 1. 복구비용예치증서 1부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없 음	

※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뒤 쪽)



[별지 제31호서식]

기 관 명					
우(우편번호) (주 소) /전화(000)000-0000/전송(000)000-0000 000과 과장 000 사무관(또는 주사·서기관) 000 담당자 000					
문서번호 : <span style="float: right;">시행년월일 :</span> 수 신 : <span style="float: right;">발 신 : □□인</span> 제 목 : 농지보전부담금 <input type="checkbox"/> 부과명세서 <input type="checkbox"/> 부과결정서(신규, 변경, 재부과) 「농지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 전부담금의 <input type="checkbox"/> 부과명세 <input type="checkbox"/> 부과결정결과를 알립니다.					
납입의무자 (농지전용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물수령지 (전화 : )					
사 업 명(전용목적)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span style="float: right;">번지 외 필지</span>					
농지전용 면적(m <sup>2</sup> )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합 계				
<input type="checkbox"/> 부과 예정 <input type="checkbox"/> 부과 결정	금 액(원)				
	감면비율	(근거 : 영 별표2 제 호)			
	산출내역				
허가·협의·그 밖에 처 분 일 자				부과기준일	
납 입 구 분 (해당란에 ○표)	통 지 납 입 (한국농촌공사)	자 진 납 부 (관 할 청)		납입기간	분할납부
				년 월 일	
자진납부하는 경우 통지번호 □□ - □□□□□ - □□□□□□ - □□					
※ 첨부서류(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 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기구청장 의 현지조사확인서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 부지의 조서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5조제3항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는 경우 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한국농촌공사 보관용)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부분)	
통 지 번 호	□□ - □□□□□□ - □□□□□□ - □□
성 명 (명 칭)	
주 소	
사 업 명 (전 용 목 적)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번지외 필지
납 입 통 지 금 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p>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p> <p>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 )의 대행자 한국농촌공사 사장 <span style="float: right;">인</span></p>	

120mm×177.8mm(OCR용지 90g/m<sup>2</sup>)

[별지 제33호서식] (납입자 보관용 앞쪽)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통 지 번 호	□□ - □□□□□□ - □□□□□□ - □□
성 명 (명 칭)	
주 소	
사 업 명 (전 용 목 적)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번지외 필지
납 입 통 지 금 액	
납 입 기 한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 )의 대행자 한국농촌공사 사장 □□인	
< 안 내 > 위 통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허가청)에 이의를 제기하 시기 바랍니다.	

안 내

- 농지보전부담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 내야 합니다.  
한국농촌공사의 직원이나 관할청의 공무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등이 취소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의 납입기한의 연기 등에 관하여는 해당 관할청(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청 (전화번호 : )
- 한국농촌공사 (전화번호 : )

[별지 제34호서식]

(납입자 보관용 앞쪽)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지번호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납입금액	금	원
성명(명칭)		
주소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납입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인  
취급자 ㉠

※ 수납기관의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입니다.

<안내> 이 영수증을 관할청에 제시하시고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 보관용 뒤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근거

- 부과근거 : 「농지법」 제38조제1항 및 제6항
-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의 %

[별지 제35호서식]

(수납기관 보관용)

O.C.R

지로의뢰서(수납은행용)

통지번호 :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지로번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flex-grow: 1;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height: 25px;"> <span> </span><span> </span><span> </span><span> </span><span> </span><span> </span><span> </span><span> </span>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height: 25px;"> <span>수수료</span> <span>별납</span> </div>
----------------------------------------------------------------------------------------------------------------------------------------------------------------------------------------------------------------------------------------------------------------------------------------------------------------------------------------------------------------------	----------------------------------------------------------------------------------------------------------------------------------------------------

농지보전부담금	금	원
성명(명칭)		
주소		
납입기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 </span> <span> </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span> </span> <span> </span> </div>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수납기관      취급자 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                  )의  
 대행자      한국농촌공사      사장      인□

※ 전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기관 유의사항>

- 납입기한 경과분은 독촉장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촉장에 기재된 납입기한까지 수납할 수 있습니다.

88.9mm×88.9mm(OCR용지 90g/m<sup>2</sup>)

[별지 제36호서식] (한국농촌공사 보관용)

<b>지 로 통 지 서 (금융결제원용)</b>							
<b>O.C.R</b>	지로번호 □□□□□□□□	금 액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원	
지로번호		고객조회번호	C	금액	C	Code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따라 주십시오							
통 지 번 호	□□ - □□□□□□ - □□□□□□ - □□						
성 명(명칭)				사 업 명 (전용목적)			
주 소							
농지보전부담금	금	원	납입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				< 한국농촌공사 >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수납기관    수    납    인                                취    급    자    인           </div>							

152.4mm×88.9mm(OCR용지 90g/m<sup>2</sup>)

[별지 제37호서식]

<h2 style="margin: 0;">한 국 농 촌 공 사</h2> <p style="margin: 0;">( 전 화 번 호 )</p>				
문서번호 :	시행일 :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한국농촌공사 사장 □□인			
제    목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통지				
<p>「농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납입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p> <p>금융기관수납일 :        년        월        일</p>				
허가청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납 입 금 액(원)	
통지번호	전 용 하 는 농지의 표시	사업명 (전용목적)	전용면적 (㎡)	납입구분

[별지 제38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납입 의무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			
부과 결정 사항	전용목적				
	납입기한	년 월 일	통지번호	□□-□□□□□□-□□□□□□-□□	
	통지금액 (원)				
신청 사항	연장기간				
	연장사유				
<p>「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단서·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아울러 연장된 납입기한내 미납시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납입의무자)</p> <p>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p>					
<p>※ 구 비 서 류</p> <p>1.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p> <p>2.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p>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증인서				
납입의무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		
부과결정사항	전용목적			
	납입기한	년 월 일	통지번호	□□-□□□□□□-□□□□□□-□□
	통지금액 (원)			
승인사항	연장기간			
	연장사유			
<p>「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단서·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연장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 립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p>				

[별지 제40호서식]

관리번호	
------	--

## 독        축        장

납입의무자	통 지 번 호	□□ - □□□□□□ - □□□□□□ - □□
	성 명 (명 칭)	
	주 소	
	사업명(전용목적)	
허 가 청 명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금	원
납 입 기 한		
<p>귀하가 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이미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에 이 독축장을 첨부하여 납입기한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농촌공사 사장        □□인</p>		
※ 안내말씀		
1. 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이 독축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축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허가청 또는 한국농촌공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상														
통지 번호	납입의무자		사업명 (진용목적)	전 용 면 적(m <sup>2</sup> )						통지 연월일	납입 기한	통지 금액 (원)	수납액 (원)	납부 연월일
				합계	농업진흥 지역안		농업진흥 지역밖		전					
주소	성명	계	담		전	계	담	전		계	담	전		

364mm × 257mm  
(인쇄용지(특급) 70g / m<sup>2</sup>)



<b>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b>				
내역확인서번호		통지번호	□□-□□□□□□-□□□□□□-□□	
납 입 자 (농지전용자)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명(전 용 목 적)				
전 용 하는 농 지 의 표 시		번 지 외 필 지		
농지전용 면적(m <sup>2</sup> )	구 분	계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합 계			
부 과 금 액 금 원				
자 진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산출세부내역				
<p>「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자진납부신청이 있어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 내역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시   ·   도   지   사 <span style="float: right;">인</span> 시장·군수·자치기구청장</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안 내

- 농지보전부담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 내야 합니다.  
한국농촌공사의 직원이나 관할청의 공무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등이 취소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입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관할청(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청 (전화번호: )
  - 한국농촌공사 (전화번호: )

### 농지보전부담금 자진납부서(영수증)

통지번호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	--

납입금액	금	원
성명(명칭)		
주소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번지 외	필지
납입기한	년	월 일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 납부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수납기관  
취급자 인

※ 수납기관의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수납기관 유의사항>

- 납부자가 제시한 내역확인서의 납입기한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보전부담금부과근거

○ 부과근거 : 「농지법」 제38조제1항 및 제6항

○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의 %

MICR

지로의뢰서(수납은행용)

통지번호 : □□ - □□□□□□ - □□□□□□ - □□

지로번호

수수료    별납

농지보전부담금	금	원
성 명(명 칭)		
주 소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    납    인  
수 납 기 관    취    급    자    인

※ 전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수납기관 유의사항>

1. 납입기간 경과분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2. 납부자가 제시한 내역확인서의 납입기한 및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8.9mm×88.9mm(MICR용지 90g/m<sup>2</sup>)

[별지 제45호서식]

(한국농촌공사 보관용)

###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

MICR	지로번호 □□□□□□□□ 금액 □□□□□□□□□□□□ 원
------	---------------------------------

※ 기입요령 : 검은색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입예와 같이 정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기입예 : □□□□□□□□□□)

통 지 번 호	□□-□□□□□□-□□□□□□-□□		
성 명 ( 명 칭)		사업명(전용목적)	
주 소			
전 용 하 는 농 지 의 표 시	번지외 필지		
농지보전부담금	금 원	납입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인  
수 납 기 관      취 급 자 ㉠

※ 수납기관의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지 로 번 호 )

( Code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아래 난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46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예정내용		면적 (㎡)		금액 (원)	
신청사항	납입기한	공사착수전	1회	2회	3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액				
	사유				
<p>「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p>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제 호  <b>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b>						
납입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당초부과결정의 통지번호		□□ - □□□□□□ - □□□□□□ - □□				
과오납내역	구분	년도	부과결정액	기납입액	정당부과액	과오납액
	금액					
	과오납사유					
환급내역	구분	년도	당초부과결정액	기납입액	변경부과결정액	환급액
	금액					
	환급사유					
환급대상	농지의표시					
	원상회복여부	년 월 일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산금산출내역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액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	결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 10px 0;">                     시 · 도 지 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 10px 0;">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span> </div> 납입자 한국농촌공사 귀하						

※ 납입자는 이 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 별지 제49호서식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청구금액				
결 정 통 지 서	제 호 ( 년 월 일) 통지기관명:			
송금계좌	예 금 주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위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span style="float: right;">인</span>  한국농촌공사 귀하				
구 비 서 류	청구인 제출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 산금 결정통지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제2호의 제출서류는 담당 공무 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표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청구인</span> <span>(서명 또는 인)</span> </div>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51호서식]

제 호 농지보전부담금 <input type="checkbox"/> 결손처분통지서 <input type="checkbox"/> 결손처분취소통지서			
납 입 자	성 명(명칭)		
	주 소	(전화번호 : )	
당초부과결정의 통 지 번 호		□□ - □□□□□□ - □□□□□□ - □□	
사업명(전용목적)			
전용농지의 표시			
체 납 현 황	부 과 결 정 액	납 입 액	체 납 액
<input type="checkbox"/> 결 손 처 분 <input type="checkbox"/> 결손처분 취소	처 분 일 자	사 유	
	년 월 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input type="checkbox"/> 결손처분 하고 「농지법 시행령」 <input type="checkbox"/> 결손처분을 취소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한국농촌공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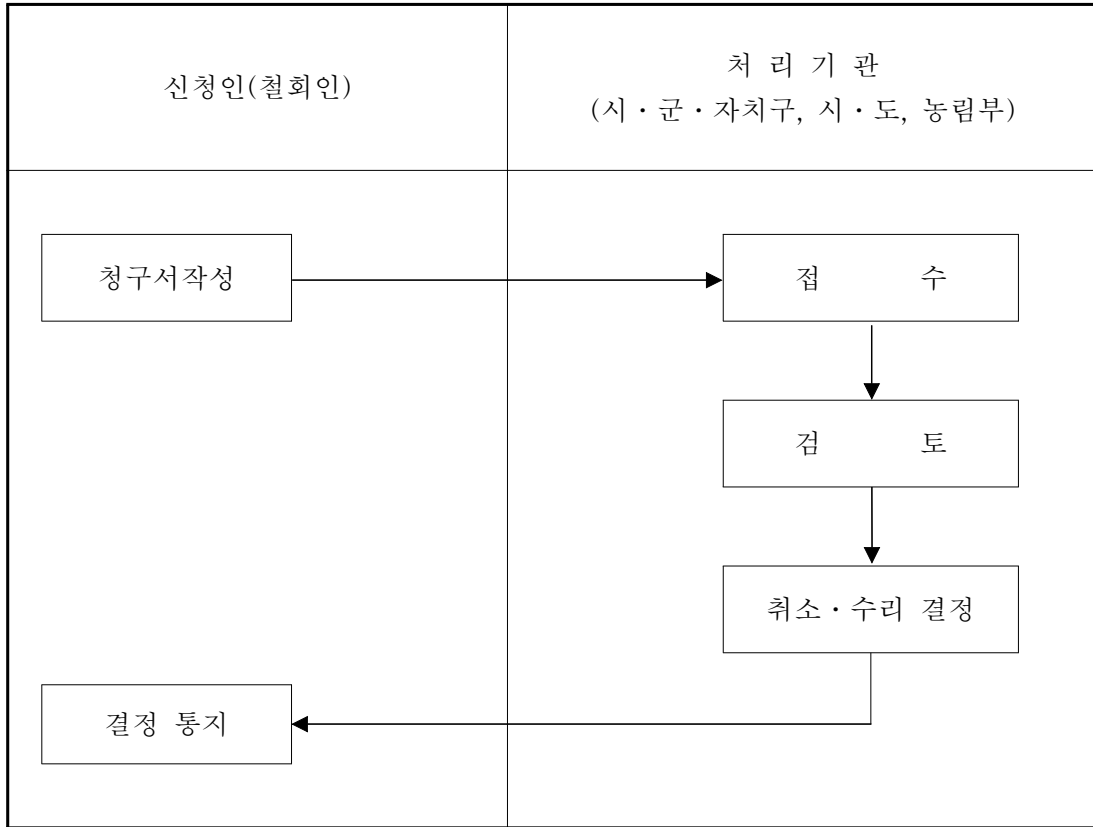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input type="checkbox"/> 농지전용신고철회서 <input type="checkbox"/>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 리 기 간					
		시·군·구 : 7일					
		시 · 도 : 10일					
		농 립 부 : 15일					
신 청 인 (철회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	소 재 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등	필지
	합 계(m <sup>2</sup> )		답		전		
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제 호		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일자		년 월 일	
허 가 기 간							
취소·철회사유							
<p>「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p> <input type="checkbox"/>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철회인) (서명 또는 인)							
농 립 부 장 관 시 · 도 지 사 귀하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 수 료	
						없 음	

210mm × 297mm(신문용지54g/m<sup>2</sup>(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농지전용신고 철회·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구 분		시·군·자치구	시·도	농림부
농지전용 허가의 취 소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	-	-
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회		○	-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					
허가의 협 의 변	신 고 의 호				허 가 · 신 고 협 의 일 자		
용도 변경 신청 내역	농 지 소 재 지	변 지 외 필 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사업장규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규모							
<p>「농지법」 제40조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100px;">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p>							
<p>※ 구비서류</p> <p>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p> <p>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p>					<p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p> <hr/> <p style="text-align: center;">「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p>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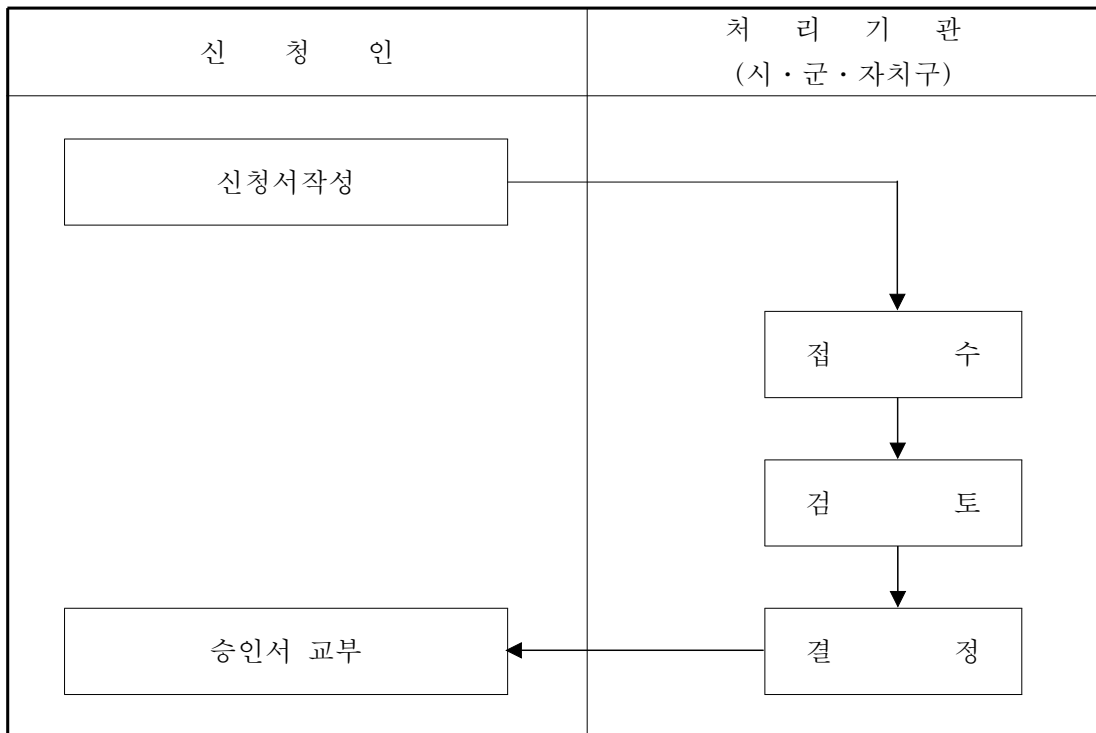
210mm × 297mm(인쇄용지(2급) 60g/㎡)

(뒤 쪽)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 지역용도 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군	읍·면	리·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6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승인 번호	일 자	신청인			용도변경내역(㎡)						사 유
					토 지 소재지	용 도 구 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용 도	전용면적	용 도	전용면적	

364mm × 257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57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						
신 청 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 소								
허 가 · 신 고		허 가 · 신 고			협 의 번 호		협 의 일 자			
용도 변경 승인 내역	농 지 소 재 지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계(m <sup>2</sup> )	답	전	계(m <sup>2</sup> )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승인토지의 지번별 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m <sup>2</sup> )	농업진흥 지역용도 구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시·군	읍·면	리·동					용 도	전용 면적	용 도	전용 면적
<p>승인조건 :</p> <p>「농지법」 제40조에 따라 농지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 · 군수 · 자치구구청장      □□인</p>										

[별지 제58호서식]

### 농 지 원 부

#### 1. 일반현황

고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초작성일자 :      년      월      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외겸업	
준농업 법인	명칭			조직형태		사업목적	
주소		시 도		구 시·군		읍·면 리·동 번지	

작성자	확인자	최종확인

농업경영 변동사항	기록자확인

세대원(업무집행사원)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	
	~	
	~	
	~	
	~	
	~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	
	~	
	~	
	~	
	~	
	~	

기록사항변경		
사유	일자	확인

364mm × 257mm  
(인쇄용지(특급) 120g/m<sup>2</sup>)

## 2. 소유농지현황

고유번호						-		-		-					
------	--	--	--	--	--	---	--	---	--	---	--	--	--	--	--

일련 번호	농 지 의 표 시				농지 구분	경지 정리	경작 구분	공유 자수	소유자 성 명	임 차 인			주재배 작 물	기록변경		
	농지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실제 (m <sup>2</sup> )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임차 기간		일자	변경 사유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3. 임차농지현황

고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일련 번호	경작 구분	농 지 의 표 시					농지 구분	경지 정리	소 유 자			임차 기간	주재배 작 물	기록변경				
		농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m <sup>2</sup> )			성명	주민등록 번호	공유 자수			일자	변경 사유	확인		
				공부	실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 × 257mm  
(인쇄용지(특급) 120 g/m<sup>2</sup>)

4. 농지경작현황

고유번호									-	-	-				
------	--	--	--	--	--	--	--	--	---	---	---	--	--	--	--

년월일	구분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계		변경 사유	기록자 (인)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필지수	면적(m <sup>2</sup> )		
	소유												
	자경												
	임대												
	임차												
	소유												
	자경												
	임대												
	임차												
	소유												
	자경												
	임대												
	임차												
	소유												
	자경												
	임대												
	임차												

364mm × 257mm  
(인쇄용지(특급) 120g/m<sup>2</sup>)



[별지 제59호서식]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										
접수일자 (접수번호)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신 청 인			신청 농지원부			용 도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 기재요령 :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등본발급시 비고란에 (무)로 기재합니다.										

297mm × 210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60호서식]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4일	
1. 농지의 소유자							
①성명(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2.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							
④ 소 재 지			⑤지번	⑥지목	※ ⑦면적(m <sup>2</sup> )	※ ⑧자경 여부	
시·군	읍·면	리·동				자 경	비자경
<p>「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                      위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p>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수 수 료	
년 월 일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시장·구청장·읍장·면장 인							
<p>작성방법 : 신청인은 ⑥번란까지만 기재하고 ※표시란은 증명관청에서 기재합니다.                      (⑧자경 여부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그 위에 셀로판테이프를 접착                      합니다)</p>							

[별지 제61호서식]

자경증명발급대장												
접수 일자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신청인			신청농지					자경여부 (필지수 기재)	
						소재지	필지수	면적(m <sup>2</sup> )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계	논	밭	자경	비자경

364mm × 257mm  
(인쇄용지(특급) 70g/m<sup>2</sup>)

[별지 제62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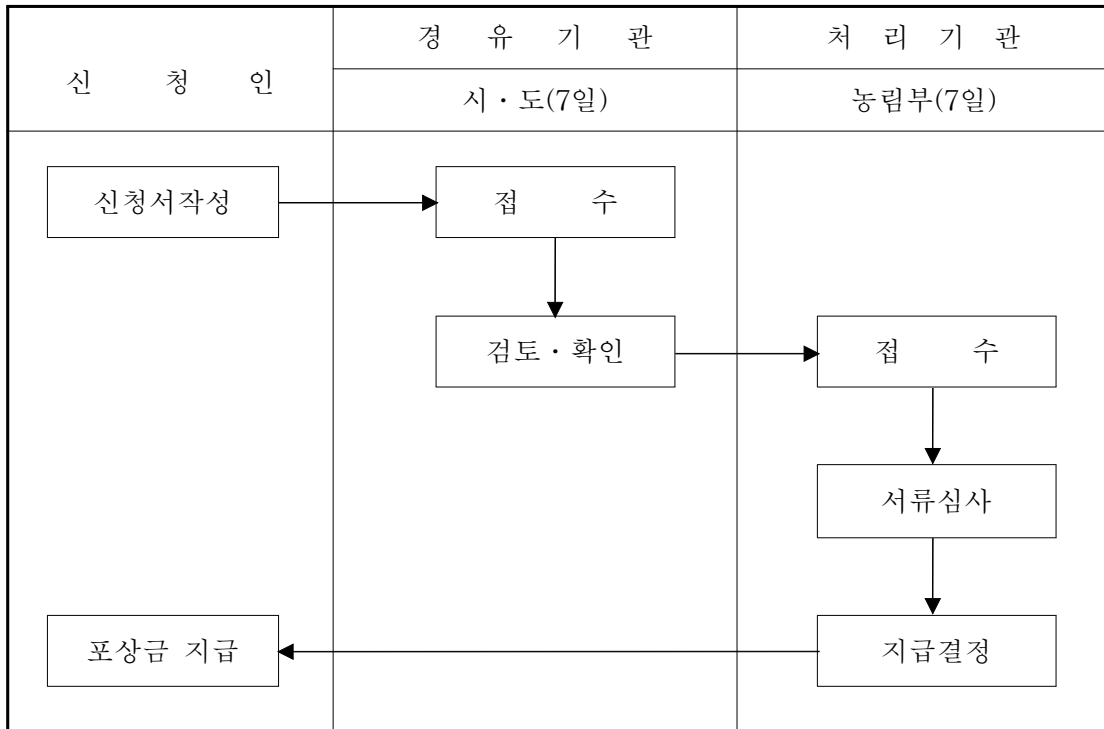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문서번호			시행일 :				년 월 일											
수 신 :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발 신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제 목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상황보고																		
구 분	용 도 별	건 수	계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계	답	전				
합 계																		
허 가	계																	
	공공부분	소 계																
			국 방 · 군 사 시 설															
			도 로 · 철 도 · 항 만 · 공 항 시 설															
		기 타 시 설																
	민간부분	소 계																
			공 장 시 설 (농수산물가공공장 제외)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주 거 시 설															
			관 광 시 설															
		농 업 용 시 설																
	어 업 용 시 설																	
	기 타 시 설																	
신고 전용	계																	
		농 가 주 택																
		농 업 용 시 설																
		어 업 용 시 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기 타 시 설																	
협의 전용	계																	
		하 천 관 리 시 설																
		산 림 복 구																
	천재지변으로 원상불능지																	

257mm × 364mm(인쇄용지(2급)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안 내

○ 포상금은

- ① 「농지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불법 농지소유자, 불법 농지전용자 등)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으로서,
- ② 동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 따라서, 농림부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회에 따르는 기간의 소요로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No.	<b>농 지 조 사 공 무 원 증</b>			사 진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농지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농지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기관장			(인)	

83mm

55mm

93mm×65mm인 쇠용지(특급)120g/m<sup>2</sup>

<h3 style="margin: 0;">주 의 사 항</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공무원이 해당 조사·검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항상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li> <li>2.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 증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li> <li>3. 이 증표의 기재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li> </ol>
------------------------------------------------------------------------------------------------------------------------------------------------------------------------------------------------------------------------------------------------------------------------





## 농 지 법 령 집

---

만든날 2007년 7월 일

펴낸날 2007년 7월 일

만든곳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

TEL : (02) 500-1670~1671

펴낸곳 한국농촌공사

---

인 쇄 일 지 사

TEL : 503-6971~5